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읍·면사무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하고 행자부의 “2016년도 복지허브화 관련 읍·면사무소 명칭 변경 지침”을 반영하여 성주읍 사무소의 명칭을 성주읍 행정복지센터로 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읍·면명 ⇒ 사무소명칭(안 별표)

- 성주읍 ⇒ 성주읍 행정복지센터
- ○○면 ⇒ ○○면사무소 등으로 변경

○ 각 읍·면별 관할구역 명시(안 별표)

- 성주읍 전역, ○○면 전역 등으로 표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「지방자치법」제6조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14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입법예고: 의견없음(2016. 10. 5. ~ 2016. 10. 11.)

라.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마. 성별영향평가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범대상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성주읍사무소 명칭 변경과 조례명 띄어쓰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,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시한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 “성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”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, 읍면사무소를 띄어쓰기와 한글맞춤법 어문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고, 조례안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읍면명 중 2016년 하반기부터 복지허브화 사업 대상지인 “성주읍”을 “성주읍 행정복지센터”로 변경하고, 선남면 등 “읍면명”을 선남면사무소 등으로 “사무소명칭”으로 개정하였으며 비고란에 읍면 관할구역을 표기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 ○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'16년 하반기부터 성주읍에 시행예정이며, 이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 가. 종류별,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별표1, 별표2) : 변동없음
 나. 직급별 정원(안 별표 3)
 ○ 총　계: 584명(변동없음)
 ○ 일반직 계: 552명(변동없음)
 ○ 본　청
 - 총　　계: 298명 ⇒ 296명(감 2)
 - 일반직 계: 293명 ⇒ 291명(감 2)
 - 6급 상당이하 소계: 278명 ⇒ 276명(감 2)
 ○ 읍　면
 - 총　　계: 154명 ⇒ 156명(증 2)
 - 일반직 계: 154명 ⇒ 156명(증 2)
 - 6급 상당이하 소계: 144명 ⇒ 146명(증 2)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
 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(직급별 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라. 입법예고: 의견없음(2016. 10. 5. ~ 2016. 10. 11.)
 마. 성별영향평가분석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2016년 하반기부터 성주읍에 시행될 예정이므로, 이에 따른 본청과 읍면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 전체 정원 584명은 변동이 없으며, 본청(주민복지과)의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2명 감하고, 읍면(성주읍) 6급 상당이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검토결과 정원 조정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